



Department of Treasury  
Internal Revenue Service

[REDACTED]

[REDACTED]

통지 번호	CP171
과세 기간	2000년 3월 31일
통지 일자	2009년 3월 23일
고용주 ID 번호	[REDACTED]
연락처	전화번호 [REDACTED]
귀하의 발신자 ID	[REDACTED]
페이지 1 / 3	

2000년 3월 31일 납기분 미납세 독촉장  
**납부해야 할 금액: \$45,083.69**

국세청은 납기가 2000년 3월 31일(Form 941)인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한 현재의 납부 금액을 알리기 위해 본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귀하가 현재 국세청 담당자와 미납 세액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경우, 본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해당 IRS 상담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.

**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**

**청구내용 요약**

납부할 세액	\$28,722.42
이자 부과액	16,361.27
<b>2009년 4월 13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</b>	<b>\$45,083.69</b>

IRS 담당자와 미납 세액에 관한 상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, 납부 금액에 동의할 경우

- 추가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금액 \$45,083.69를 2009년 4월 13일까지 납부하십시오.  
- 신용카드, 전자자금인출 (EFW) 또는 전자연방세금납부 시스템 (EFTPS)을 통한 납부는 [REDACTED]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뒷 면에 계속...



**납부**

[REDACTED]

통지 번호	CP171
통지 일자	2009년 3월 23일
고용주 ID 번호	99-9999999

- 수표나 환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지정하십시오.
- 귀하의 지급수단과 모든 서신에는 귀하의 고용주 식별 번호 (99-9999999), 과세 기간 (2000년 3월 31일) 및 양식 번호(941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**2009년 4월 13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**

**\$45,083.69**

INTERNAL REVENUE SERVICE

[REDACTED]

과세 기간 2000년 3월 31일  
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 
고용주 ID 번호 [REDACTED]  
페이지 2 / 3

####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- 계속

IRS 담당자와 미납 세액에 관한 상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, 납부 금액에 동의할 경우 - 계속

- 전액을 납부할 수 없으면 현재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시고, [REDACTED] 번으로 전화하여 잔액 납부에 대한 귀하의 선택을 상의하십시오.

#### 귀하가 납부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

- [REDACTED]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계좌를 확인하십시오. 저희에게 우편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. 아래 '연락처 정보' 부분에 내용을 기입하고 잘라내어 이 잘라낸 부분을 서신이나 문서에 동봉하여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십시오.

#### 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

- 2009년 4월 13일까지 \$45,083.69를 납부하지 않으면, 이자 금액이 증가하고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, 국세청은 언제든지 귀하의 재산에 연방세 유치권 통보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- 유치권이 설정되면 귀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세금 유치권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도 표시되므로—귀하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—IRS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의 채권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통지합니다.
- 귀하가 세무부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("강제징수")권을 갖습니다.

#### 이자 부과액

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액을 완납하는 날까지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(내국세법 제6601항)

항목	금액
총 이자	\$7,878.55

#### 연락처 정보

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[REDACTED] 번으로 전화하거나 [www.irs.gov](http://www.irs.gov)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
귀하가 서신을 동봉하는 경우 여기를 체크하십시오. 모든 서신에는 귀하의 고용주 식별 번호 [REDACTED], 과세 기간 (2000년 3월 31일) 및 양식 번호(941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오전     오후     오전     오후

기본 전화번호

통화 가능 시간

추가 전화번호

통화 가능 시간



과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 
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 
고용주 ID 번호 [REDACTED]  
페이지 3 / 3

#### 이자 부과액-계속

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금 신고서 제출마감일부터 세액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과태료를 포함하는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. (내국세법 제 6601 항)

아래 표는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사용된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자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[REDACTED] 번으로 문의하십시오.

기간	이자율
1999.4.1 ~ 2000.3.31	8%
2000.4.1 ~ 2001.3.31	9%
2001.4.1 ~ 2001.6.30	8%
2001. 7. 1 ~ 2001. 12.31	7%
2002.1.1 ~ 2002.12.31	6%
2003.1.1 ~ 2003.9.30	5%
2003.10.1 ~ 2004.3.31	4%
2004.4.1 ~ 2004.6.30	5%
2004. 7. 1 ~ 2004. 9.30	4%
2004.10.1 ~ 2005.3.31	5%
2005.4.1 ~ 2006.6.30	7%
2006. 7. 1 ~ 2007. 12.31	8%
2008.1.1 ~ 2008.3.31	7%
2008.4.1 ~ 2008.6.30	6%
2008. 7. 1 ~ 2008. 9.30	5%
2008.10.1 ~ 2008.12.31	6%
2009. 1. 1 일 이후	5%

#### 추가 정보

- 참고 사이트: [www.irs.gov/cp171](http://www.irs.gov/cp171).
- 세무 양식,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1-800-TAX-FORM(1-800-829-3676)으로 전화하십시오.
- 일반적으로 저희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상대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납세자 계좌에 관하여 국세청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종업원, 고용주, 은행 또는 이웃 사람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계좌와 관련하여 저희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귀하의 소기업이 어떤 연방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준법 또는 집행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소기업청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)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'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'(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)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[www.sba.gov](http://www.sba.gov)를 방문하여 키워드 "ombudsman"을 검색하십시오.
-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 서류로 보관하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